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등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1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등	3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강화	8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16.
- (3) 회 부 일 : 2024.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 다.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마. 정신질환자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7조).
- 사.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 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II. 검토의견

1.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등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의 참여를 명시하고,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 -----제 4항----- ----- -----.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15조의5(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1.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등 서비스 연계</u> <u>2.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익 옹호 사업</u> <u>3. 정신질환자¹⁾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연계</u> <u>4.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회복 지원</u> <u>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u>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²⁾’을 일

1) ‘정신질환자’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권는데, 개정안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증진사업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과거 정신질환자였거나 현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증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신질환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 현행법의 기본이념⁴⁾을 구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료지원인에 대하여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역별로 인원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신질환의 재발에 대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사업 참여가 보장되도록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2024. 1. 23.>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한편, 개정안이 신설·운영하려는 동료지원센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돕는 역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⁵⁾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심리회복 지원이나 정보제공 연계 등 개정안에서 열거된 동료지원센터의 업무는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⁶⁾, 동료지원센터⁷⁾의 업

5)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무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인바, 동료지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들을 특화하여 기존 정신질환자 지원 체계에서 명확히 규정한 후 서비스 공급 측면의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사업에의 동료지원인 참여는 전문자격의 담보가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은 의무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 필요가 있음. ○동료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업무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의 동료지원인 참여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이 규정하는 동료지원센터의 업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통하여 기 수행중인 업무들로서 신규로 센터를 설치할 경우 기관 역할 중복이 우려됨.
인천광역시	○동료지원인의 정신질환 재발 등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개정안이 규정하는 동료지원센터의 업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통하여 기 수행중인 업무들로서 신규로 센터를 설치할 경우 기관 역할 중복이 우려됨.
대한의사협회	○동료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검증이 필요하고, 동료지원인 단독으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동료지원인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5조의4(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동료지원인에 대한 교육 사업이 있으나, 이를 표준화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적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료지원센터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여지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정신간호사회	○동료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기 전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업무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강화

□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고용지원 등,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주간활동지원, 가족 등 지원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개인별지원계획수립) ①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해당 정신질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
별지원계획의 신청을 받는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
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서비스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
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야 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복
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
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

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용지원 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취업알선,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취업 정신질환자의 직업지도 및 고용촉진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⑥ 기업,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센터, 동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생략)

<신설>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료지원센터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퇴원등이 예상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거주와 치료·재활 등이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에 복귀 또는 거주하는 정신 질환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자립 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지원, 단기거주 주거지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복귀 또는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주간활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주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족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

<u>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보제공 및 교육 지원</u> <u>2.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u> <u>3.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u> <u>4. 가족 자조모임 지원</u> <u>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실시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고용지원 등,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주간활동지원, 가족 등 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의 입법

8) 예컨대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안 제33조의2(개인별지원계획수립)은 구조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유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신설되는 주간활동지원을 포함하여 다방면의 지원에 있어서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발달장애인은 해당 법률에서 대상집단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명료하게 규정⁹⁾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의 대상집단인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¹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개정안에서 지원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애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애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려는 정신질환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파악 및 대상자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대상자 선정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군·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최종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당 지역 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다면 그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의 수요자 규모에 따라 인력과 공간 확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불가피해 보이는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이 분산되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수요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한 단계적 실시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¹¹⁾.

- 셋째, 고용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 심층상담을 통한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전문인력 양성, 정신질환자 고용 기업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은 사업의 특성상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용·주거 지원 및 급여

11)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진자의 수는 68만 5,000명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시범사업 또는 연구용역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구체화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신질환자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특별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경우,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하여 중복의 우려가 있고, 당사자와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지역사회 활용가능 자원을 넘어서는 때 지속적인 수정·변경 요청 등 어려움이 예상됨. ○나머지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은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에서의 주간활동 지원은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경기도 인천광역시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중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그밖의 행정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정신간호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에 노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애게도 그 수립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98